

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지침

제정 2018. 6. 8.
개정 2020. 8.21.
개정 2021. 4.19.
개정 2022. 4.27.
개정 2023. 5.25.
개정 2023. 10.12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사업 추진 체계

제3조(조직)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획처에 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조직하고 사업추진단장(이하 “사업단장”이라 한다) 및 부단장을 둔다.

② 사업단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부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, 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사업단은 사업 수행을 위해 실무추진팀을 두며, 필요한 인력(교원 및 전담직원 등)을 둘 수 있다.

⑤ 사업단 인력의 채용, 처우 및 업무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정한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⑥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처 소속 직원에게 사업단 업무를 겸무시킬 수 있다.

제4조(업무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추진 총괄적인 수행 및 관리
2.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별 예산편성
3. 사업집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
4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5.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
6. 사업 자체 평가관리 및 환류
7.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
8. 그 밖에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
제3장 위원회

제5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대학원장, 교무처장, 훈련학생처장,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
2. 사업 관련 세부 지침 마련 및 사업비 예·결산 심의
3. 사업 집행과정 및 사업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4. 자체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 등 주요사항
5.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 운영 실적 점검 및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전임교원, 직원, 조교, 학생 및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사업 추진 실적 분석
3.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
4.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계획 수립
5. 그 밖에 자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미래기획위원회) ①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과감한 혁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교무처장, 훈련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대학의 전임교원, 직원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미래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사업의 추진 및 실행을 위한 최종 심의·의결
2.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·부

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와 서기는 사업 총괄부서의 팀장과 직원으로 한다.

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

제9조(사업비 관리) ① 사업비는 대학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한다.

②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「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 지침」 및 대학회계 관련 규정 및 「한국체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다.

③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④ 사업비 관리부서는 기획처가 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8. 6. 8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·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지침의 폐지) 이 지침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에 폐지한다.

부 칙(2020. 8. 21.)

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4. 19.)

이 지침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4. 27.)

이 지침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5. 25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지침의 폐지)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「한국체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지침」은 폐지한다.

부 칙(2023. 10. 12.)

이 지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